■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

1. 성희롱 · 성폭력이란?

① 성희롱

요양보호사나 어르신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·수치심·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.

- 농담이라도 상대가 불쾌하면 성희롱
- 어르신, 보호자, 동료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
- 거부했는데도 계속하면 명백한 성희롱

② 성폭력

성(性)을 매개로 한 신체적·언어적·심리적 폭력으로 성추행, 성기노출, 음란한 말·요구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.

☞ 신체 접촉이 없어도

☞ 말·시선·행동만으로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성희롱·성폭력 유형 (현장에서 자주 발생)

■ 육체적 - 껴안기, 손잡기, 특정 부위 만지기, 목욕·위생관리 중 부적절한 접촉 요구

■ 언어적 -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, 성적인 농담, 사적인 질문, 성관계 관련 발언이나 요구

■ 시각적 - 신체 노출, 음란물 보여주기, 붙여두기

■ 기타 - 사회통념상 성적 불쾌감을 주는 모든 말과 행동

3. 법적 기준 (중요)

어르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,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

"어르신이니까", "치매라서"는 면책 사유가 아님

4. 요양보호사가 꼭 알아야 할 사실

✔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음

✔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

✔ 집, 방문요양 현장, 낮 시간에도 자주 발생

✔ 거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님

5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 실천수칙

- 어르신을 존중하되 선은 분명히 불필요한 신체접촉 하지 않기
- 사적인 이야기, 음담패설 응하지 않기
- 불쾌한 표정·회피 행동은 거부의사로 인식
- 명확한 동의 없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

6. 방문요양 현장 실제 사례 (주의!)

- 이동 시 껴안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경우
- 로션·세면 중 손을 놓지 않으려는 행동
- 목욕 보조 중 성기 만져달라는 요구
- 혼자 있는 장소로 이동 요구
- 반복적인 성적인 말·농담

☞ 즉시 중단 + 거리 유지 + 기관 보고

7.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

▪ 요양보호사 행동 요령

- 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
- 은 행동이 반복되면 기록(일지) 남기기
- 시 센터 담당자에게 보고
- 자 참고 넘기지 않기

▪ 기관의 역할

- 즉시 상황 파악 및 보호
- 요양보호사 불이익 금지
- 필요 시 서비스 조정·중단
- 재발 방지 조치 및 교육 실시

8.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처

▶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☎ 033-811-2282

▶여성긴급전화 ☎ 1366

▶국가인권위원회 ☎ 1331

▶경찰 ☎ 112